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7. 16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23

다. 의안번호 : 제 26 호

라. 상정일자 : 2001. 7. 23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19명 감축
 -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 ⇒ 집행기관의 정원
-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에 따른 3명 증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2 (제81회-2차부록)

-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1. 7. 16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23

다. 의안번호 : 제 28 호

라. 상정일자 : 2001. 7. 24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금고의 설치 : 농협거창군지부
-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금고운용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 함으로써, 금고운용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7. 1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23

다. 의안번호 : 제 29 호

라. 상정일자 : 2001. 7. 24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금고의 설치 :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함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도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7. 1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23

다. 의안번호 : 제 30 호

라. 상정일자 : 2001. 7. 24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1973. 9. 4 조례 제234호로 제정되어 1984. 1. 24 조례 제747호로 1차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현재까지 단 1건도 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1년 잔존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코자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폐지 조례안은 1973. 9. 4 조례 제234호로 제정되어 1984. 1. 24일 1차 개정 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 제·개정 후 지금까지 보도구역 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폐지 조례안은 1973. 9. 4일 제정되어 지금까지 보도구역내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폐지된 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

[거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레중개정조레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제 출 일 : 2001. 7. 18

○ 제 출 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23

다. 의안번호 : 제 27 호

라. 상정일자 : 2001. 7. 24

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 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 사용자에게 대하여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키 위함.

나. 주요골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조항 신설(안 제8조의2)
- 건설폐기물매립장 처리 수수료 기준 신설(안 제21조)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조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21조)

-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별표 7)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되는 건설 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사용자에게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기재생략

6. 수정안 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한편,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 기재생략

9. 기타 필요한 사항

- 기재생략